

지 권 소 식

[2015. 2. 27 제124호]

대한전문건설협회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협회 Tel : 02-3284-1177 / Fax : 02-3284-1179

※회원님만을 위한 소식지오니 사장님께 직접 전달하여 주십시오.

부실·불법 건설사 대상 구조조정 대폭 강화한다

국토부, 5월부터 부실 우려 5000개사 실태조사
불공정행위 현장점검서 적발되면 즉각 행정처분
부실기업 조기경보 가동... 주기적신고 폐지 검토

부실우려가 높거나 불법행위를 저지른 건설사 등에 대한 구조조정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보여 건설사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건설업계 관계자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한 '2015년 건설산업 주요 정책 설명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국토부는 오는 5월에서 9월 사이에 신용평가등급이 낮아 부실우려가 높은 건설사 약 5000개사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여 자본금 등 등록기준 적합 여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기준 미달이 확인되면 각 등록관청별로 영업정지나 등록말소 등 행정처분이 이어진다.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하지 않는 등 불공정행위 건설사에 대한 현장점검도 5월 6월 실시해 위법이 확인된 건설사에 대해서는 즉각 행정처분이 이뤄질 예정이다. 현장조사에는 국토부와 자치단체, 관련 협회가 투입된다.

이와 함께 부실업체에 대한 조기경보시스템 가동도 한층 강화된다.

건설산업종합정보망(KISCON)의 건설업 등록, 재무정보, 기술인력, 보증실적, 공사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부실·불법업체를 자동 적발해 행정처분청에 상시 통보하게 된다.

이 같은 조기경보시스템은 건설사들로부터 별도의 서류를 받을 필요가 없어 행정부담이 없고 의심업체 적발부터 처분 완료까지의 전 과정이 종합 관리된다.

특히 조기경보시스템을 통해서도 등록기준 충족여부 뿐만 아니라 건설기술자 중복배치, 등록증 대여 등 불합법행위도 적발할 수 있어 강력한 통제수단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업계의 의견을 받아들여 주기적 신고를 폐지하는 것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주기적 신고를 대체할 수 있도록 조기경보시스템 등을 통해 상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장치를 본격 가동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국토부 건설산업 주요정책 설명회' 주요내용 임직원 입찰담합 벌금액 2억 이하로 대폭 상향

설명회는 지난달 21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된 '건설산업 입찰담합 예방 및 시장 불확실성 해소방안'의 내용을 업계에 설명하고 올해 추진할 정책 방향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내용을 살펴본다.

◇입찰담합 방지=입찰담합 징후 감지 시스템을 개발·운영한다. 지나친 저가경쟁 구도로 인해 담합의 요인으로 지적됐던 최저가낙찰제를 폐지하고 종합심사 낙찰제를 도입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상 임직원의 입찰담합 벌금액을 2억원 이하로 대폭 상향 조정한다. 담합 연루 임직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현재 진행중이거나 사전에 인지한 담합사건은 신속히 조치하고 입찰제한 제도에 제척기간을 도입해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한다.

◇기업부담 완화=신규 건설사가 일시적으로 자본금이 부족해도 50일 이내의 범위에서 행정처분을 유예하고 기술안전 분야 행정규칙도 현행 51개에서 22개로 대폭 줄인다. 전문건설공사에 대해서는 직접시공계획서 제출을 면제하고, 설계·CM 등 건설기술용역업 등록기준을 완화한다.

◇해외건설 진출 지원=건설공제조합 보증서가 해외공사 입찰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현지은행(UAE)과 협력을 강화하고 신용 증نام시 시장 진출을 위해, 미주개발은행(IaDB)과 MOU를 체결한다. 공공과 민간이 협력해 사업기회를 발굴하고 해외 건설 전문인력 양성에 적극 나선다.

◇발주제도 선진화=최저가낙찰제를 폐지하고 공사수행능력과 가격 등을 종합평가해 낙찰자를 선정하는 종합심사낙찰제를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 시행한다. 지난해 국토부 산하기관이 18개 사업에 대해 적용한 결과 최저가낙찰제 대비 약8%의 낙찰률 상승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SOC 유지관리 패러다임 전환=SOC 고령화에 대비해 시설물의 안전 뿐 아니라 사용성과 내구성 등 성능까지 포괄하는 선제적·예방적 SOC 유지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싱크홀 등에 대비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마련한 특별법 제정, 3차원 지도구축 등 기반침하 예방대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분쟁조정 활성화=분쟁이 발생한 경우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우수 사례집을 발간하고 전문인력 보강 등을 내실있게 추진한다.

◇기업형 주택임대사업 육성=그 동안 부진했던 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특히 주택임대사업을 획기적으로 육성한다.

조합 보증한도 확대한다

하자보수보증건설기계보증 등 보증위험가중치 대폭 낮춰 보증한도 추가 효과 7000여 억원, 오는 3월 시행

조합이 보증한도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합원 지원을 위해 보증제도 개선에 나섰다. 보증한도 산정에 적용되는 보증위험가중치를 인하여 실질적인 보증한도를 확대하고, 조합의 선급금 공동관리제도에 따라 공동관리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보증한도와 수수료 혜택을 제공한다.

조합은 지난 2월10일 제203차 운영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보증규정 개정안을 의결하고, 오는 3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보증위험가중치는 보증별 사고율을 반영해 위험의 정도를 수치로 표시한 값으로, 보증금액에 보증위험 가중치를 곱한만큼 보증한도가 차감되기 때문에 보증위험가중치가 인하되면 실질적인 보증한도 증가효과가 있다.

먼저, 하자보수보증과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에 적용되는 보증위험가중치를 인한다. 하자보수보증의 경우 0.5의 가중치가 적용되어 발급됐던 모든 보증서들에 대한 가중치를 0.3으로 인하고, 보증기간이 10년 이상인 하자보증 중 5년 이상 경과한 건에 대해서는 보증위험 가중치를 50% 경감한다. 이번 가중치 인하는 이미 발행된 모든 하자보수보증에 소급 적용돼 6천여개 조합원사가 4천억원 이상의 보증한도 증액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하자보수가중치 인하는 모든 업종에 동일하게 적용되지만, 장기 하자보증

발급이 많은 철콘, 토공, 강구조와 같은 업종의 수혜 폭이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의 보증위험가중치도 3에서 2로 인한다. 지난해 건설기계보증 발급실적을 기준으로 보증한도 추가효과는 1천2백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건설기계보증이 지난 2013년 제도도입 이후, 지난해부터 보증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 이번 가중치 인하 조치의 효과는 앞으로 더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선급금 공동관리제도도 조합원 부담경감을 위해 개선된다. 공동관리되는 선급금에 대해서는 새로운 보증한도를 부여하고, 보증수수료 할인율도 20%에서 50%로 2배 이상 대폭 상향된다.

아울러, 부동산, 예적금 등 조합에 제공한 물적담보를 이용해 추가 보증한도 이용도 가능해진다. 즉, 조합에 제공한 물적담보가 있다면 해당 담보의 유효담보가액의 100%를 보증한도로 활용할 수 있다. 유효담보가액은 담보물의 시가에 담보인정비율을 곱한 금액에서 선순위 금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조합은 지난해 7월 조합원이 제공한 물적담보의 담보인정금액을 유효담보가액 전액으로 확대하도록 담보규정을 개정한 바 있다. 기존에는 유효담보가액 중 근저당설정 채권 최고액(130%)을 감안해 일부만 담보로 인정했었다.

하도급법령 해설

부당하도급대금 결정금지

합의해도 일정금액 할당해 감액하면 '부당하도대'

'부당 하도급대금 결정 및 감액 심사지침'에 대한 구체적 위법성 심사기준에 대해 살펴본다.

◇법제4조제2항 '정당한 사유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정당한 사유'여부는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해야 하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객관적·합리적으로 산출된 근거에 따라 종전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일률적인 비율로 인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거나 일률적 비율에 의한 단가결정이 개별적 단가결정에 비해 수급사업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일률적인 비율'은 둘 이상의 수급사업자나 품목에 대해 특성이나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동일하거나 일정한 규칙에 따라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비율을 말한다. 인하율이 수급사업자에 따라 약간의 편차가 있어도 전체적으로 동일하거나 일정한 구분에 따른 비율로 단가를 인하여 볼 수 있다면 '일률적인 비율'이 적용된 것으로 보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침에서 제시하고 있는 특색있는 위반유형으로는 △수급사업자의 전년도 영업이익률이 원사업자보다 높다는 이유로 종전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거래규모를 일정률씩 획일적으로 인하하는 행위 △원자재가격 인하 등을 정당한 사유로 제시했으나 제시한 사유와 무관한 항목에서 단가를 일률적으로 인하하는 행위 △새로운 과업이 추가되면서 여기서 발생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이를 수급사업자들이 제시한 견적금액에서 일정률씩 일방적으로 인하하는 행위 등이 있다.

◇법제4조제2항제2호의 '협조요청 등 어떠한 명목으로든 일방적으로 일정금액을 할당한 후 그 금액을 빼고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위법성은 원사업자의 협조요청이나 상생협력 등 명목여하 또는 수급사업자의 합의 여부에 불문하고 일방적으로 일정금액을 할당해 그 금액을 빼고 하도급대금을 결정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수급사업자별로 일정금액을 할당한 후 협의과정에서 일부 수급사업자의 경우 할당한 금액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법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원사업자가 물가인상이나 가격경쟁 심화와 같은 경제여건 변화에 따라 수지개선 방안으로 원가절감 목표를 정해 수급사업자별로 할당한 후 협조요청 등의 방법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공정위로부터 부과받은 과징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만큼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추가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기 위해 일방적으로 절감액을 할당한 후 사정변경을 이유로 그 금액을 빼고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가 대표적 유형이다.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서 미발급 250곳 제재

국토부, 동종 간 하도급 등 35곳도 과징금 부과

건설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서를 발급하지 않은 250개사가 시정명령 등 제재처분을 받는다.

국토교통부는 건설산업종합정보망(KISCON)을 활용해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서 발급 불이행 업체 250곳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건설산업기본법상 원도급자는 하도급계약 시 하도급자에게 하도급대금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발급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에는 시정명령 또는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다.

국토부는 지난해부터 KISCON을 통해 입수한 건설업체의 기성실적, 공사대장 정보와 보증기관으로부터 받은 계약보증 정보를 교차 확인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서 발급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미발급업체 657개사를 적발했다.

국토부는 또 재하도급, 동종 간 하도급 등 하도급 제한을 위반한 35개사도 적발해 과징금 부과 등 제재 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국토부는 지자체, 발주기관 합동으로 공사대금 미지급 장비대금 지급보증서 미발급 등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도 일제점검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조달청, 공공조달시장

관행적 불공정사례 공개

조달청(청장 김상규)은 최근 지난해 '불공정행위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적발한 불공정행위를 9가지 사례로 분류해 홈페이지(참여민원코너 →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를 통해 공개했다.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조달계약 과정의 불공정행위를 전담하기 위해 조달청 내 설치운영하고 있다.

이번 사례공개는 2014년 조달청 불공정행위 신고센터에 접수된 123건 중 불공정행위로 판명된 35건을 분석한 것으로 그간 공공조달 시장에 관행화된 불공정행위를 공론화함으로써 수요기관과 조달업체에 경각심을 주기 위한 것이다.

김상규 조달청장은 "조달계약 체결 이후 발주기관과 계약업체가 상호 약속한 것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시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특히, 올해부터는 전담팀을 구성·운영해 불공정 조달행위 근절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협 회 동 정

□ 무료법률 상담 안내

조합은 고객을 위하여 무료법률 상담을 실시하고 있사오니 많은 이용바랍니다.

- 상 담 자 : 조합 법무팀 직원 또는 조합 자문변호사
- 상담장소 : 전문건설회관 채권관리본부 법무팀 사무실
- 상 담 실 : ☎ 02-3284-2122
- 상담시간 : 09:00~18:00

- * 협의회 홈페이지(www.rpf.or.kr) 활성화 안내
- 귀사의 홍보 내용을 협의회 홈페이지에 올려드립니다.
- 회원사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 지건소식지는 협의회 홈페이지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 다음호(제125호)는 2015년 3월 16일 발행합니다.